의 번 호

1908

【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】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일 자 : 2022. 1. 21.(금)

나. 발 의 자 : 이명녀의원 외 7명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3. 4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3. 23.(수)

2. 제안설명 요지(이명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등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O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, 제5조)
-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6조, 제7조)

다. 근거법규

- ○「지방자치법」제13조
- 「도로교통법」제2조 및 제80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하성천)

-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등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
- O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-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- 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· 운영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「도로교통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 3. 21., 2013.

- 3. 23., 2014. 1. 28., 2014. 11. 19., 2017. 3. 21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, 2018.
- 3. 27., 2020. 5. 26., 2020. 6. 9., 2020. 12. 22.>
- 1. "도로"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.
 - 가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
 - 나. 「유료도로법」에 따른 유료도로
 - 다.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도로
 - 라.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(車馬)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
- 2. "자동차전용도로" 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.
- 3. "고속도로"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.
- 4. "차도" (車道)란 연석선(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(境界)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
- 제80조(운전면허)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·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 허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20. 6. 9., 2020. 12. 22., 2021. 1. 12.〉
 - ②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6. 1. 27., 2017. 7. 26., 2020. 12. 22.〉
 - 1. 제1종 운전면허
 - 가. 대형면허
 - 나. 보통면허

다. 소형면허

라. 특수면허

- 1) 대형견인차면허
- 2) 소형견인차면허
- 3) 구난차면허
- 2. 제2종 운전면허

가. 보통면허

나. 소형면허

다.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

- 3. 연습운전면허
 - 가. 제1종 보통연습면허
 - 나. 제2종 보통연습면허
- ③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6. 9., 2020. 12. 22., 2021. 1. 12.>
- ④ 시·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. 〈개정 2020. 12. 22.〉

[전문개정 2011. 6. 8.]